총학생회칙 11-1-1

규정번호 11-1-1
제정일자 2006.12.1
최근개정 2025.1.23
개정차수 4차 개정
관리부서 학생복지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회는 명지전문대학 총학생회(이하 “본 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회는 민주적 학생자치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양성하며 대학인으로서의 전인적 인격함양과 전공분야에서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연구 및 그 응용방법을 연마하여 민족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설치) 본 회는 명지전문대학 내에 둔다.

제4조(자격) 본 회는 회원의 자격을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한다. 다만, 휴학한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

제5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
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.

③ 본 회의 회원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를 갖는다.

④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와 본 회의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항할 권리를 갖는다.

⑤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

⑥ <삭제(2023.08.07.)>

제6조(학생지도위원회) ① 본 회는 본 회의 자치활동에 있어서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.(개정 2025.1.23.)

②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자치의 본질적인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회를 지도한다.(개정 2025.1.23.)

제7조(회의구성) 본 회는 학생총회,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, 집행부, 운영위원회, 동아리연합회로 구성한다.(개정 2025.1.23.)

제2장 학생총회

제8조(지위) 학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사기구이다.

제9조(구성) 학생총회는 본 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.

제10조(권한) 학생총회는 본 회의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.

제11조(의장) ①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.

②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소추 및 궐위 시는 학생지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5.1.23.)

제12조(소집) ① 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20%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(개정 2025.1.23.)

② 총회는 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. 단,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(개정 2025.1.23.)

제13조(의결) ① 학생총회는 회원 20%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개정 2025.1.23.)

②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탄핵결정에 관한 학생총회는 회원 20%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개정 2025.1.23.)

제3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(개정 2025.1.23.)

제14조(지위 및 책임) ①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의 회장, 운영위원회의 위원장, 집행부의 장이 된다.

② 총학생회장은 학교의 중대사나 학생활동에 관계되는 회의의 학생대표로 참석 발언할 수 있다.

③ 총학생회장은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활동과 학생활동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업무집행에 있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의무를 가진다.

④ 부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을 승계하며, 궐위 이외의 사유로 총학생회장이 그 권한 행사를 못할 때에는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5조(임기)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(개정 2025.1.23.)

제16조(신분보장)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신분은 보장된다.(개정 2025.1.23.)

제17조(선출) ①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은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.(개정 2025.1.23.)

②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이 동시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생지도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한다.(개정 2025.1.23.)

제18조(업무 및 권한) 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① 본 회의 학생총회,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.

② <삭제(2025.1.23.)>

③ 집행부의 각 부장 및 차장을 부총학생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(개정 2025.1.23.)

④ 본 회의 회칙개정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고 확정된 회칙을 3일 이내에 공고한다.

⑤ 총학생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한다.(개정 2025.1.23.)

⑥ 대내·외의 활동에 있어서 본 회를 대표한다.

⑦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.

제4장 집 행 부

제19조(지위)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.

제20조(구성) 집행부는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, 각 부장, 차장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25.1.23.)

제21조(업무 및 권한)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1. 집행부는 총학생회장의 총괄하에 소관업무를 집행한다.
2. 집행부는 제반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.(개정 2014.03.01)
   가. 운영기획부 : 본 회와 학생의 학술활동 등을 기획 및 총괄
   나. 재무관리부 : 본회의 재정 전반에 관한 업무(개정 2025.1.23.)
   다. 흥보지원부 : 본 회의 대내·외적 홍보 활동에 관한 업무
   라. 사회환경부 : 교내 사회 활동 및 지역사회 내 환경 관련 업무
   마. 학생복지부 : 특수한 장애나 특정고충이 있는 학생들을 보호 및 학생복지 전반에 관련된 업무
   바. 문예편집부 : 문예활동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과 교지편집에 관한 업무
   사. 문화예술부 :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관련 업무
   아. 보건체육부 : 체육행사 및 체력증진과 친선도모 등 체육에 관한 모든 사항
   자. 남녀소통부 : 남·여학생의 편의활동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
   차. 야간협력부 : 야간 및 산업체와 관련된 제반 사항

제5장 운영위원회

제22조(지위)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운영기구이다.

제23조(구성)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, 집행부 각 부장, 각 학과회장, 동아리연합회장으로 한다.(개정 2025.1.23.)

제24조(위원장)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

제25조(업무 및 권한)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1. 총학생회의 제반 사업계획안 편성 심의·의결(개정 2025.1.23.)
2. 총학생회비의 심의·의결(개정 2025.1.23.)
3. 총학생회의 예산 및 결산안 심의·의결(개정 2025.1.23.)

4.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심의·의결(개정 2025.1.23.)
5. 회칙 개정안 심의·의결(개정 2025.1.23.)
6. <삭제(2025.1.23.)>
7. <삭제(2025.1.23.)>
8. <삭제(2025.1.23.)>

제26조(회의)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한다.(개정 2025.1.23.)

1. 정기회의 : 정기회의는 매 학기 3회로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(개정 2025.1.23.)
2. 임시회의 : 임시회의는 총학생회장 및 운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(개정 2025.1.23.)

제6장 대의원회<삭제(2025.1.23.)>

제27조(지위) <삭제(2025.1.23.)>

제28조(구성) <삭제(2025.1.23.)>

제29조(임기) <삭제(2025.1.23.)>

제30조(의장 및 부의장) <삭제(2025.1.23.)>

제31조(의무 및 권한) <삭제(2025.1.23.)>

제32조(소집)<삭제(2025.1.23.)>

제33조(의결)<삭제(2025.1.23.)>

제7장 동아리연합회

제34조(구성)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로 구성한다.(개정 2025.1.23.)

제35조(회장) 동아리연합회의 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운영위원이 된다.

제36조(업무 및 권한) 동아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
제37조(회칙)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본 회칙과 상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을 가질 수 있다.

제8장 재 정

제38조(재원) 본 회의 재정은 총학생회비로 한다.

제39조(회계연도) 본 회의 예산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40조(회비) ① 본 회의 회비는 집행부에서 책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한다.(개정 2025.1.23.)

② 본 회의 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.

③ 총학생회비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총학생회장이 집행한다.

제41조(예산) ① 본 회를 구성하는 각 기구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며, 학생지도위원회는 의결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.(개정 2025.1.23.)

② <삭제(2025.1.23.)>

③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집행의 부득이한 필요가 있을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④ 예산안 확정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
제42조(결산 및 감사) 집행부는 매 학기말과 총선 직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에 결산을 제출한다.(개정 2025.1.23.)

제9장 선 거

제43조(선거) 본 회의 선거는 보통·직접·비밀·평등선거로 한다.

제44조(선거권) 본 회의 회원은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다.

제45조(피선거권) 피선거권은 아래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한다.

1. 피선거권자는 총학생회 정·부회장, 학과 정·부회장, 동아리연합회 정·부회장으로 하고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.(개정 2025.1.23.)
   가. 2학기 이상 등록(2년제) 및 4학기 이상 등록(3년제)을 필하고 현재 재학 중인 자
   나. 직전학기 평균평점 3.0 이상인 자(단, 총학생회 외 기타 기구 정·부회장의 경우 2.5 이상인 자)(개정 2025.1.23.)
   다.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(개정 2025.1.23.)
   라. 유급·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
   마. 제적 등의 사유에 따른 재입학 사실이 없는 자
   바.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2. 제1호에 규정되는 않는 자의 피선거권과 선거는 별도 회칙에 따른다.(개정 2025.1.23.)

제46조(선거방법) 총학생회 정·부회장은 공동 입후보하여 본 회 회원 30% 이상의 직접선거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, 단독출마 시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회원 30%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단, 투표율이 30% 미만인 경우 7일 범위 내에서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(개정 2025.1.23.)

제47조(선거시기) ①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선거는 총학생회선거규약 제6조제5호에 따른다.(개정 2025.1.23.)

② 기타 기구의 선거시기는 각 기구의 회칙에 의한다.

제48조(보궐선거) ①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 회칙 제21조에 정한 부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5.1.23.)

② 기타 기구의 보궐선거는 각 기구의 회칙에 따른다.

제49조(선거관리위원회) ① 집행부와 각 학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.(개정 2025.1.23.)

② 시기 : 매년 10월 중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구성한다.(개정 2025.1.23.)

③ 5~7명의 범위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50조(기타사항)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학생회선거규약에 따른다.(개정 2025.1.23.)

제10장 회칙개정

제51조(발의) 본 회 회칙 개정은 총학생회장과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본 회 회원 20%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.(개정 2025.1.23.)

제52조(의결) ①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개정 2025.1.23.)

② 본 회 회칙 전면 개편 시에는 학생총회에서 의결한다.

제53조(공포 및 효력발생) 회칙 개정안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학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(개정 2025.1.23.)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회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1. 신·구 집행부가 교체될 시에는 집행부 상호간에 인계인수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.

2. 본 회칙에서 정한 학과별 학회 순서로 그 학회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.(학회에 관한 사항은 각 학회별 학회 회칙에 의한다.)

② (경과조치) 본 회칙은 다음의 경과조치를 갖는다.

1. 본 회칙에 정한 여학생부의 업무는 여학생회의 발족시 여학생회에서 관장한다.

2. 본 회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단, 이번 회칙의 효력 발생은 제18조에 준하되 총학생회장이 공포하지 않을 시에는 효력이 3일 후 자동 발효한다.

부 칙

본 회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회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회칙은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제6항)

부 칙

본 회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30조제2항)

부 칙

이 회칙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(제6조제1항·제2항, 제7조, 제11조제2항, 제12조제1항·제2항, 제13조제1항·제2항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제1항·제2항, 제18조제2항·제3항·제5항, 제20조, 제21조제2호나목, 제23조, 제25조제1호~제8호, 제26조, 제26조제1호·제2호, 제27조~제33조, 제34조, 제40조제1항, 제41조제1항~제2항, 제42조, 제45조제1호, 제45호제1호나목·다목, 제45조제2호, 제46조, 제47조제1항, 제48조제1항, 제49조제1항·제2항, 제50조, 제51조, 제52조제1항, 제53조)